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73,195,564	110,195,867
일반회계	3,245,929,353	97,377,881
특별회계	427,266,211	12,817,986
공기업특별회계	342,666,059	10,279,98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1,656,738	4,849,70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1,009,321	5,430,280
기타특별회계	84,600,152	2,538,005
교통사업 특별회계	40,599,620	1,217,98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61,190	37,836
대지보상 특별회계	714,000	21,420
수질개선 특별회계	13,477,014	404,31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647,038	109,411
균형발전특별회계	22,090,049	662,70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773,500	83,20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37,741	1,13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443,672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